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환준비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 또는 중앙회, 체신관서 등에 예치하게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전체위원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함.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으로 제한하고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의 중앙회 총 차입한도 변경(안 제14조)

- 예금 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 가능하도록 함

나. 상환준비금 보유 개선(안 제16조)

- 상환준비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관과 동일하게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부보

금융회사(중앙회 및 체신관서 포함)에의 예치 등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보유토록 개선하고자 함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외부전문가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함

마.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안 제46조)

-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유사기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감독위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금고의 총자산”을 “금고의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인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5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금
2. 중앙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의 예치

제24조의2제1호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명”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 또는 법률”을 “금융·법률·회계·감사 또는 인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 또는 법률”을 “금융·법률·회계·감사 또는 인사”로,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을 “외부전문가인 위원 중”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제33조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51조의3제1호 본문 중 “중앙회 또는 금고”를 “중앙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을 “중앙회에서 최근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업”을 “금융”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생 락)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 회로부터의 차입은 <u>해당 금고의</u> <u>총자산</u>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u><신 설></u>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금고의 기존</u> <u>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u>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인 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u>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u> <u>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u> <u>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기존 차</u> <u>입금을 제외한 총자산 범위를</u> <u>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u>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 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 일까지 중앙회에 예탁하여야 하 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u>특</u> <u>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5조에</u> <u>따른</u>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 다. <u><신 설></u>	제16조(상환준비금) ① ----- ----- ----- ----- ----- <u>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u> ----- --. <u>1. 현금</u>

<신 설>

② (생 략)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
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
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중앙회의 감사위
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2. 중앙회, 「예금자보호법」 제
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1. -----

-----.

-- 5년 -----

-----.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 이사장 2명

2.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2명

3.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1명

4.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명(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⑥ (생략)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 ⑤ (생략)

⑥ 준비금의 여유자금은 제33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

1. -----
-- 1명

2. ----- 1명

3. 금융·법률·회계·감사 또는 인사-----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

4. 금융·법률·회계·감사 또는 인사-----
1명-----

③ ----- 외부전문가인 위원 중-----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신 설>

1.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감사
· 감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 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2.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
는 방법

1. 중앙회-----

중앙회에서
최근 5년 -----

-----.

3. 금 흥 -----

있을 것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